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280
----------	------

2024년 12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 상정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취·창업 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1)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운영
- 2) 위탁유형 : 시설위탁
- 3) 위탁기간 : 3년(2025. 5. 1. ~ 2028. 4. 30.)
- 4)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여성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사무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 필요.
 - 여성인재양성 및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 취·창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
- 5)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 및 관리
 -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및 고용유지사업
- 여성의 창업을 위한 공간·정보·상담 제공 등 여성창업자 지원사업
-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 그 밖에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6)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07길 50(중계동)
- 규 모 : 대지 4,959㎡, 건축면적 4,910㎡(지상 1층 ~ 4층)
- 시설현황 : 강의실, 컴퓨터실, 실습교육실(미용, 의상 피부관리 등), 세미나실, 강당, 상담실 등
- 인력현황 : 12명
 - 센터장 1명, 관리팀 4명, 교육팀 3명, 취·창업팀 4명
- 위치도



7)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8) 소요예산 : 금1,503백만원(2024년 예산)

- 인건비 649백만원, 운영비 557백만원, 시설물유지관리비 187백만원, 특화교육 프로그램 50백만원, 사업비 60백만원

9)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권고)

- 2024년 제7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2024. 9. 26. 통보)

3.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5조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4. 여성발전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6조제9호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2) 예산조치 : 2025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기 타 : 종합성과평가는 별도평가(여성능력개발원 주관)로 대체

- 근 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II.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동의안 제출 경위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의 위탁기간 ('22. 5. 1.~ '25. 4. 30.)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및 제12조제3항1)에 따라 시설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2항2)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9조3),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호4) 등에 따라 여성의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신설(2024.4.4.시행) “재위탁” 정의 정비 및 재계약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2024.4.4.부터 시행한다. 신설된 조항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6년 경과 후 최초 도래하는 재위탁, 재계약건에 대한 의회동의 절차를 삭제하되 재계약 횟수 1회로 제한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여 동의를 구하는 조항이다.

2)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4)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5.14., 2020.7.16., 2021.5.20., 2024.3.15>

4. 여성발전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해 설치·운영 중인 시설임.

- 현재 권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까지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붙임1 참고】
- 시장이 위탁하려는 센터 운영 사무의 구체적 내용과 민간위탁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음.
 -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및 고용유지사업
 - 여성의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상담 및 여성창업자 육성사업
 -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
 - 그 밖에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 북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경위는 아래와 같음.

〈서울북부여성발전센터 운영 현황〉

(2023. 12. 기준)

소재지		면적(m ²)		연간사업비(천원)		위탁기간		운영주체		
노원구 동일로 207길 50(중계동)		대지 4,959m ² 건축 4,910m ²		1,503,000		'22.5.1.~'25.4.30.		(사)한국여학사협회		
인력구성(명)		계		센터장		팀장		직원		
		12		1		3		8		
교육운영						취·창업지원				
직업교육(313과정)			생활문화교육(117과정)			구직자(명)	취·창업(명)	취업률(%)		
교육인원(명)	수료인원(명)	수료율(%)	교육인원(명)	수료인원(명)	수료율(%)					
5,575	4,412	79.14	2,173	2,023	93.1	4,832	2,023	41.87		

2 민간위탁 추진 경위 및 개요

- 북부여성발전센터는 89년 9월 개관한 이래 2004년까지 서울시가 직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04년 최초 위탁 이후 현재까지 총 7차례 민간위탁 기간 중 현 수탁법인인 ‘(사)한국여학사협회’에서 최초 위탁한 이후 지금까지 20년간 운영 중에 있음.

<서울북부여성발전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 경위>

- '89. 09. 08.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개관
- '79. 10. ~ '04. 4. 서울시 직영 운영
- '04.05.01 ~ 민간위탁
 - 1회차 공개모집 '04.5.1.~'07.4.30.[3년, (사)한국여학사협회]
 - 2회차 공개모집 '07.5.1.~'10.4.30.[3년, (사)한국여학사협회]
 - 3회차 공개모집 '10.5.1.~'13.4.30.[3년, (사)한국여학사협회]
 - 4회차 공개모집 '13.5.1.~'16.4.30.[3년, (사)한국여학사협회]
 - 5회차 공개모집 '16.5.1.~'19.4.30.[3년, (사)한국여학사협회]
 - 6회차 공개모집 '19.5.1.~'22.4.30.[3년, (사)한국여학사협회]
 - 7회차 공개모집 '22.5.1.~'25.4.30.[3년, (사)한국여학사협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3항 및 제18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제출되는 ‘운영평가결과’에서 북부여성발전센터는 S등급, 전체평균 83.13점보다 높은 총점 94.50점으로 5개 여성발전센터 중 종합순위 1순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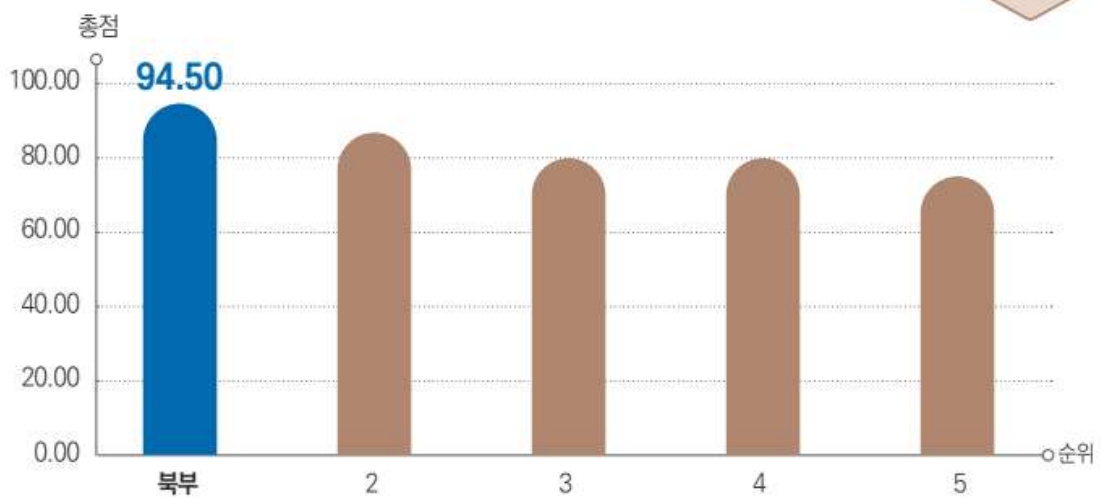
〈최종평가결과 및 종합순위 결과〉

I 최종결과



평가지표	방법	배점	점수
1. 기관운영 역량	정성	10	10.00
2. 일자리창출 사업실적	정량 / 정성	25	22.50
3. 이용자 만족도	정량	10	8.90
4. 집행절차 준수 노력	정량	10	8.40
5. 기관 특화 전략	정성	10	10.00
6. 여성미래일자리 발굴 및 확산	정량 / 정성	10	8.70
7. 유관기관네트워크	정성	10	10.00
8. 조직관리 역량	정량 / 정성	15	14.00
9. 가점	정량 / 정성	5	2.00
10. 감점	정량 / 정성	-5	0.00
총점		100	94.50

종합순위결과



- 서울시 북부여성발전센터의 주요성과는 여성취업시장 및 지역 산업, 일상회복에 따른 교육수요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센터의 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점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방식, 이용자 결제 시스템 등을 개선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이를 타 센터에도 우수사례로 많이 확산되면 좋을 것으로 평가됨

〈2023 운영평가결과 주요내용〉

구분	내용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취업시장 및 지역산업, 일상회복에 따른 교육수요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센터발전방향을 적극으로 모색한 점이 돋보임 ○ 취·창업 서비스 개선 노력 전반에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상당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이 추진한 것으로 보임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방식, 이용자 결제 시스템 등을 개선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며, 타 센터에도 우수사례로 많이 확산되면 좋을 것임
개선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여성취업지원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필요. 예를 들어, 구직자 프로파일링이나 신규 구인업체나 유망직종에 대한 연구도 추진해 볼 필요 ○ 고령화,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 등을 고려하여 고학력 중고령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여성 등의 취업역량 강화 및 일자리 발굴 사업 등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취·창업 서비스 개선 노력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역동적인 관련 서비스들이 추진되었음. 향후 질적 고도화와 성과 향상을 위한 하나의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 보기를 바람 ○ 실버산업은 여성 미래 일자리로 적합하며 전망이 좋으나, 여성 미래 일자리로 좀 더 도전적인 신생 분야나, 그간 여성이 별로 진출하지 않았던 분야를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함

- 북부여성발전센터의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1순위이며 취·창업자 수와 90일 이상 고용유지율을 제외한 일자리 사업실적 평가 종합 평점 또한 최상위 센터인 것으로 나타남.

<북부여성발전센터 일자리창출 사업실적 평가 결과>

구분	1) 취·창업실적		2) 상용직취업 실적		3) 여성취약계층 실적		4) 구직등록 실적		5) 고용유지율	
	2022년 전체 취·창업자 수	점수	2022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점수	2022년 여성 취약계층 취업자 수	점수	2022년 구직 등록자 수	점수	고용 유지율 (%)	점수
북부여성발전센터	2,023	4.00	801	1.00	25	1.00	4,832	1.50	71.04	3.50
여성발전센터 평균(m)	1,547	4.00	565	0.50	18	0.40	3,013	1.10	69.83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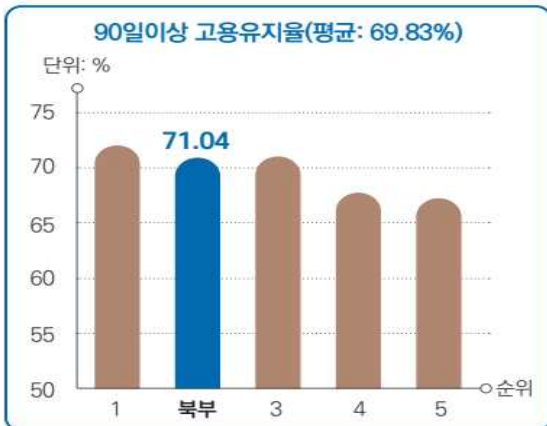
취·창업 성과 평점



취·창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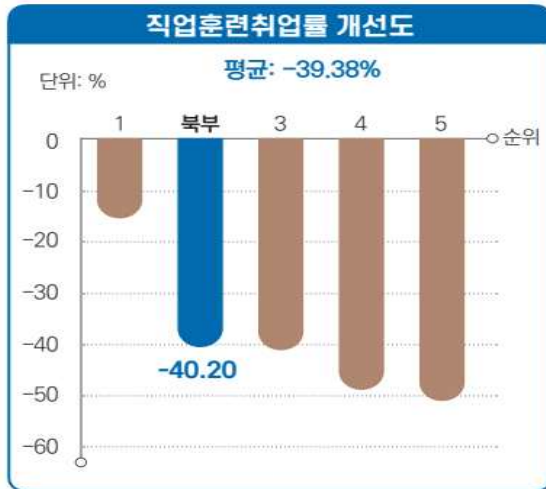


고용유지율



- 다만, 취·창업 서비스 개선 노력을 살펴보면 직업훈련 취업률 개선도는 2순위이나 3개년간의 직업훈련 취업률이 타 센터에 비해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확인됨.

<취창업 서비스 개선 노력>



3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제2항5)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6)에서 ‘여성관련시설의 운영 등은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조례」제4조7) 및 제6조8) 등에서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여성 대상 취·창업 교육, 취업 알선 및 창업 지원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여성발전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 5)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6)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의2호에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금번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등 그 사무의 전문성 및 노하우를 고려할 때,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민간위탁조례」제4조의3⁹⁾ 및 제18조¹⁰⁾에 따르면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2023년 북부여성발전센터 운영평가¹¹⁾ 결과는 S 등급, 총점 94.05점으로 5개 여성발전센터 중 1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취·창업 성과 및 구직등록 실적 개선도 또한 월등히 높은 성과를 보임.
- 여성발전센터의 운영평가 시 일자리창출 사업실적 외에도 기관 운영실적이나 조직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센터의 설치·운영 목적이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인 점을 고려하여 위탁 시 여성발전센터 본연의 업무인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취업률 제고에 역량과

9)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0)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여성능력개발원 :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평가·조정·지원 등의 총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

문 의 처

(02-2180-8146)

<붙임>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운영 현황

구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위치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양천구 남부순환로 371(신월동)	금천구 독산로 50길 23(시흥동)	노원구 동일로 207길 50(중계동)	마포구 토정로 35길 17(용강동)
규모	대지3,312㎡ 건물7,406㎡	대지1,551㎡ 건물3,472㎡	대지15,067㎡ 건물 5,786㎡	대지4,959㎡ 건물4,910㎡	대지2,010㎡ 건물3,871㎡
설립	'02.5.1.	'97.12.03.	'79.10.26.	'89.9.8.	'86.12.16.
명칭 · 조직변경	동부여성발전센터 →동부여성플라자 (’05.11) →여성능력개발원 (’07.5) →여성능력개발원 조직개편 동부여성 발전센터 가능분라 복원(’14.10)	동부여성발전센 터	구로부녀복지관 →남부여성발전 센터(’96.9)	노원부녀복지관 →북부여성발전센 터(’96.9)	마포복지관 →중부여성발전센 터(’96.9)
운영 방식	민간위탁	직영 ↓ 민간위탁(’99.07)	직영 ↓ 민간위탁(’04.05)	직영 ↓ 민간위탁(’04.05)	직영 ↓ 민간위탁(’03.10)
위탁 법인 (대표)	레마학원 (윤원영)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법인 (김병윤)	(사)서울여성 노동자회 (신상아)	(사)한국여학사 협회 (김기정)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은미)
위탁 기간	'23.10.01.~ '26.09.30.	'24.03.01.~ '27.02.29.	'22.05.01.~ '25.04.30.	'22.05.01.~ '25.04.30.	'24.10.15.~ '27.10.14.
인력	14명 *여성창업플라 자(2명)포함	11명	12명	12명	11명
'24 예 산 (민간위탁금) (백만원)	1,822백만원	1,236백만원	1,253백만원	1,316백만원	1,106백만원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280
----------	------

제출년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취·창업 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나. 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운영
- 나. 위탁유형 : 시설위탁
- 다. 위탁기간 : 3년(2025. 5. 1. ~ 2028. 4. 30.)
-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추진 필요성

- 여성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사무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며
- 여성인재양성 및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 취·창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마. 위탁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 및 관리

-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및 고용유지사업
- 여성의 창업을 위한 공간·정보·상담 제공 등 여성창업자 지원사업
-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바.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07길 50(중계동)
- 규모 : 대지 4,959㎡, 건축면적 4,910㎡(지상 1층 ~ 4층)
- 시설현황 : 강의실, 컴퓨터실, 실습교육실(미용, 의상 피부관리 등), 세미나실, 강당, 상담실 등
- 인력현황 : 12명
 - 센터장 1명, 관리팀 4명, 교육팀 3명, 취·창업팀 4명

○ 위치도



사.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아. 소요예산 : 금1,503백만원(2024년 예산)

- 인건비 649백만원, 운영비 557백만원, 시설물유지관리비 187백만원, 특화교육 프로그램 50백만원, 사업비 60백만원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권고)

- 2024년 제7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2024. 9. 26. 통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5조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4. 여성발전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의2호에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5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종합성과평가는 별도평가(여성능력개발원 주관)로 대체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 여성능력개발원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조정·평가 및 지원
3.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창업 촉진 사업 추진
4.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여성능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박부경(☎ 2133-5333)